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2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6. 2. 공포, 2013. 8. 6. 시행)됨에 따라 창업인프라 구축과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 투자 인정범위를 재정의함(안 제9조)

프로젝트 투자 범위를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제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

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함(안 제17조)

- 1)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을 취소 사유로 보육실 총면적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때,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 결과 3회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때를 규정함
- 2) 창업보육센터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별표1】**을 신설하여 평가 점수 40점 미만인 때는 운영성과 부진으로 판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영 제9조제6항제1호”를 “영 제5조제7항제1호”로 하고, 제1항제7호 중 “영 제9조제6항제2호”를 “영 제9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다.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각 호 및 제2항,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3조제4항제3호에
서 “시설 및 장소의 운영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수시 점검 결과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임대실적이 증·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 총면적의100분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
지된 때
2.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3회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때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안 제17조제2항 관련)

1. 평가 개요

가. 중소기업청장은 연 1회 이상 창업보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창업보육 인프라	운영·관리	가·감점	계
배 점	40	60	각 20 이내	100±가·감점

다. 중소기업청장은 각 창업보육센터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업무 운영상황 보고 자료를 검토하여 각 창업보육센터의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라. 중소기업청장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40점에 미달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정한다.

정 상	부 진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평가점수가 40점 미만

2.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창업보육 인프라	인 력	센터장의 전문성	7
		전담 인력 확보 및 전문성	15
	운영 자금	운영 자금 확보	8
	시설·장비	시설·장비 확보	10
	소 계		40
운영· 관리	창업보육 인프라 개선 의지	사업자의 관심 및 의지	2
		센터장의 관심 및 적극성	2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3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	6
		시설·장비 관리 및 투자	6
		보육료(임대료)의 투입률	4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실적	센터 운영 체계화 실적	5
		시설·장비 운영	9
	입주·졸업기업 지원 성과	입주기업 지원	9
		입주기업 성과(고용·매출 등)	12
		졸업기업 성과(고용·매출 등)	2
	소 계		60
가 점	입주기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실적		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18점 이내
감 점	부실 운영 등에 따른 제재 처분 여부		8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12점 이내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요소 및 기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p> <p>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1. ~ 5. (생략)</p> <p>6. <u>영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u></p> <p>7. <u>영 제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u></p> <p>② ~ ④ (생략)</p> <p>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u>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u></p>	<p>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p> <p>① ----- ----- ----- ----- ----- ----- -----, (이하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영 제9조제7항제1호</u>----- ----- -----</p> <p>7. <u>영 제9조제7항제2호</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u>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p>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신 설>

2.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과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제17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법 제43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란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임대실적이 증·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임대한 때를 말한다.

<신 설>

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 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가. (현행 1호와 같음)

나. (현행 2호와 같음)

나. (현행 3호와 같음)

2.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제17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3조제4항제3호에서 “시설 및 장소의 운영 실적이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시 점검 결과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임대 실적이 증·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때

2.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3회 연속 부진한 것으로

<신 설>

나타난 때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연 락 처	(042) 481 - 4409